하며, 착용할 때는 신체에 맞게 잘 조여주어야 한다.

- (3) 개인부양장치는 폐쇄된 기관실이나 장비 칸에 있다면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,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개인부양장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- (4) 바지선은 정기적으로 구명용 로프 등 안전시설과 작업환경, 기계적인 결함여부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.
- (5) 바지선 갑판 또는 다른 선체와의 간격이 30cm 이상일 경우, 통로나 사다리를 반 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바지선 위에서 구조 절차 등이 포함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근로자에 게 주지하여야 한다.
- (7) 바지선 위 구조 장비는 대기 선박을 사용하거나, 적정 길이의 로프의 구명환(최소 30m)과 수면 1m 아래까지 내려가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근로자가 바지선에서 떨어졌을 경우 등 비상 시 구조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 훈 련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.

## 5.4 바지선의 기계 및 장비 사용 안전조치 사항

- (1) 바지선에서 작업 시 기계와 장비 사용에 다른 협착, 추락, 충돌, 낙하, 감전, 화상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2) 바지선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는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사용 전 모든 장비의 검사
  - (나) 장비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제조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유지보수
  - (다) 장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교육
  - (라) 선박 또는 갑판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 또는 영구적인 안전난간의 설치
  - (마) 지지 핀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, 보호 또는 잠금 장치로 안전한지 확인
  - (바) 비상 시 정지가 가능해야 하고, 장비운전 위치의 안전시설 설치
- (3) 호이스트, 크레인, 데릭 등 양중장치의 작업 반경 내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